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59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한기영, 고병국, 김창원,
김상훈, 문영민, 이은주,
홍성룡, 김평남, 이현찬,
김제리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사전 절차인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보다 강화되어 있어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시행자를 제외한다”를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